

근 로 계 약 서

사용자	회사명	주식회사 마음에이아이	대표자	유 태 준
	소재지	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40번길 30, 판교IT센터 4층		
근로자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		

- 제 1조(고용계약) 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.
- 제 2조(근로자의 성실의무) 근로자는 사용자의 명령.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에 종사한다.

제 3조(근로계약기간)

- 1) 근로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. 다만, 계약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1년간 계약기간이 갱신한 것으로 본다.
- 2) 본 계약기간 중에도 "사용자"와 "근로자"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.
- 3)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이 종료되면 본 계약도 자동 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.

제 4조(취업 장소 및 업무)

- 1) 취업 장소 : ㈜마음에이아이
- 2) 담당 업무 :
- 3) 1,2항의 장소 및 업무는 회사의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.

제 5조(유급휴일)

- 1) 주휴일(일요일)
- 2) 근로자의 날
- 3) 기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날

제 6조(휴가)

- 1)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
- 2)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가

제 7조(소정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)

- 1) 소정근로시간 : 09:30 ~ 18:30
- 2) 휴 게 시 간 : 12:30 ~ 13:30
- 3) 전 1항과 2항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담당업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
제 8조(연 봉)

연봉 계약서 별도 작성

제 9조(임금 지급일)

- 1) 급여는 제8조 연봉 금액을 12할한 금액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당월 21일에 지급한다. 단, 급여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.
- 2) 결근, 지각, 조퇴 시에는 당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임금을 공제한다.

제 10조(임금 지급방법)

임금 및 수당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하거나, 근로자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 입금한다.



제 11조(기밀 유지)

임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절대 기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 시 징계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..

제 12조 (해고사유)

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30일전에 사전 통보하고 해고할 수 있다.

- 1) 근로자가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업무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2) 근로자가 폐질, 불구, 질병, 기타의 사유로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- 3) 채용 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는 등 채용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4) 학력, 경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
- 5) 이외에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제 13조(퇴직)

- 1) 근로자는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예정일 30일 전까지는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2)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 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거나,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.
- 3) 사용자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연금으로 지급한다.
- 4)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·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 14조 (근무평정)

사용자는 연 1회 이상 근로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계약시의 계약급여 책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, 평가 방법과 기준은 사용자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15조 (기타)

- 1)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및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2) 상기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.

제 16조 (부칙)

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.

년 월 일

사용자 : 주식회사 마음에이아이 대표이사 유 태 준



근로자 : (인 혹은 서명)



연봉계약서

사용자	회사명	주식회사 마음에이아이	대표자	유 태 준
	소재지	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40번길 30, 판교IT센터 4층		
근로자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		

연봉 계약기간		~	•
기간 구분		만 1년 만 1개월	
총 금액		원	원
연봉 구성내역	기본급	원	원
	통상시급	원	원
	연장+휴일근로수당	원	원
	야간근로수당	원	원
성과상여금		특정인원을 대상으로 실적에 따라 지급 가능	

- 1. 연봉계약기간 중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회사 경영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계약내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또는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계 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.
- 2. 연봉내역은 1년 총액기준으로 표시되었으며, 월 급여는 총 계약연봉의 12할을 매월 정기 급여 지급일(매월 21일)에 본인이 희망하는 은행계좌로 이체한다.
- 3. 고정 '연장근로 및 휴일근로'는 월 44시간, '야간근로'는 월 12시간으로 하며, 그 수당은 위 표와 같다.
- 4. 본인의 연봉금액을 공표하거 나 타인의 연봉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.
- 5. 연봉은 개인의 직무 및 직능, 성과에 따라 책정됨을 인정하고 타인과의 상대적 차이를 근거로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.
- 6. 본 기간 경과 이후의 연봉은 경영실적 및 인사평가를 종합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.
- 7. 기타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제반 기준을 적용한다.

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.

년 월 일

사용자 : 주식회사 마음에이아이 대표이사 유 태 준

P**

근로자 : (인 혹은 서명)